

경제 규제혁신 TF  
23-4-2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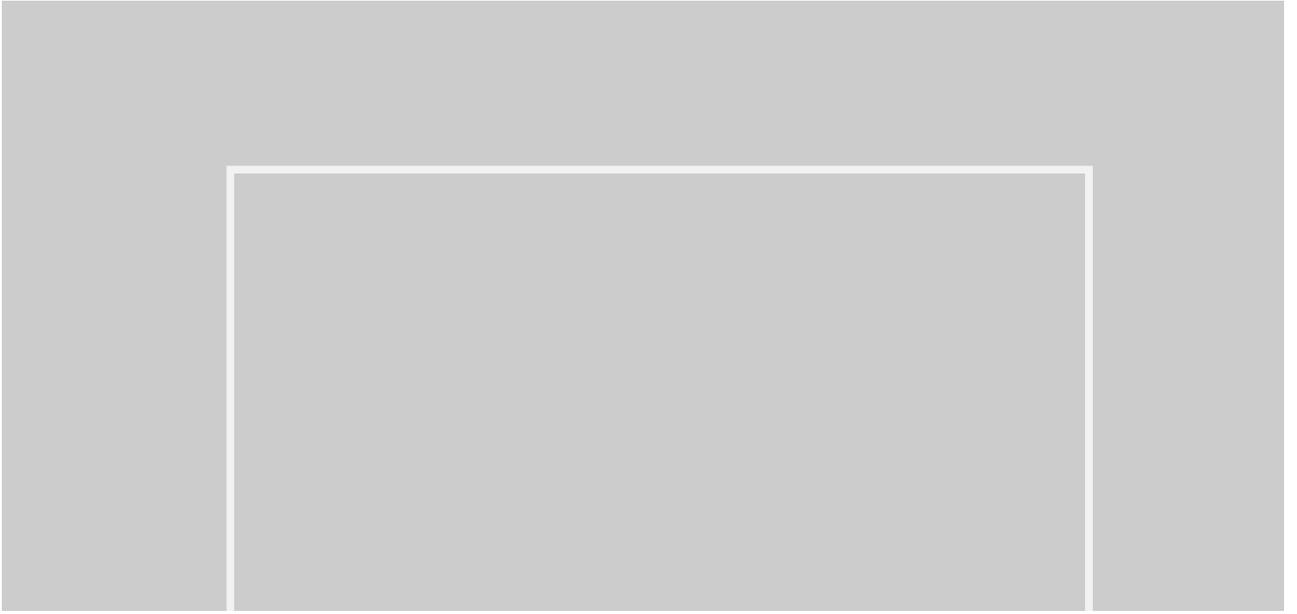
#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2023.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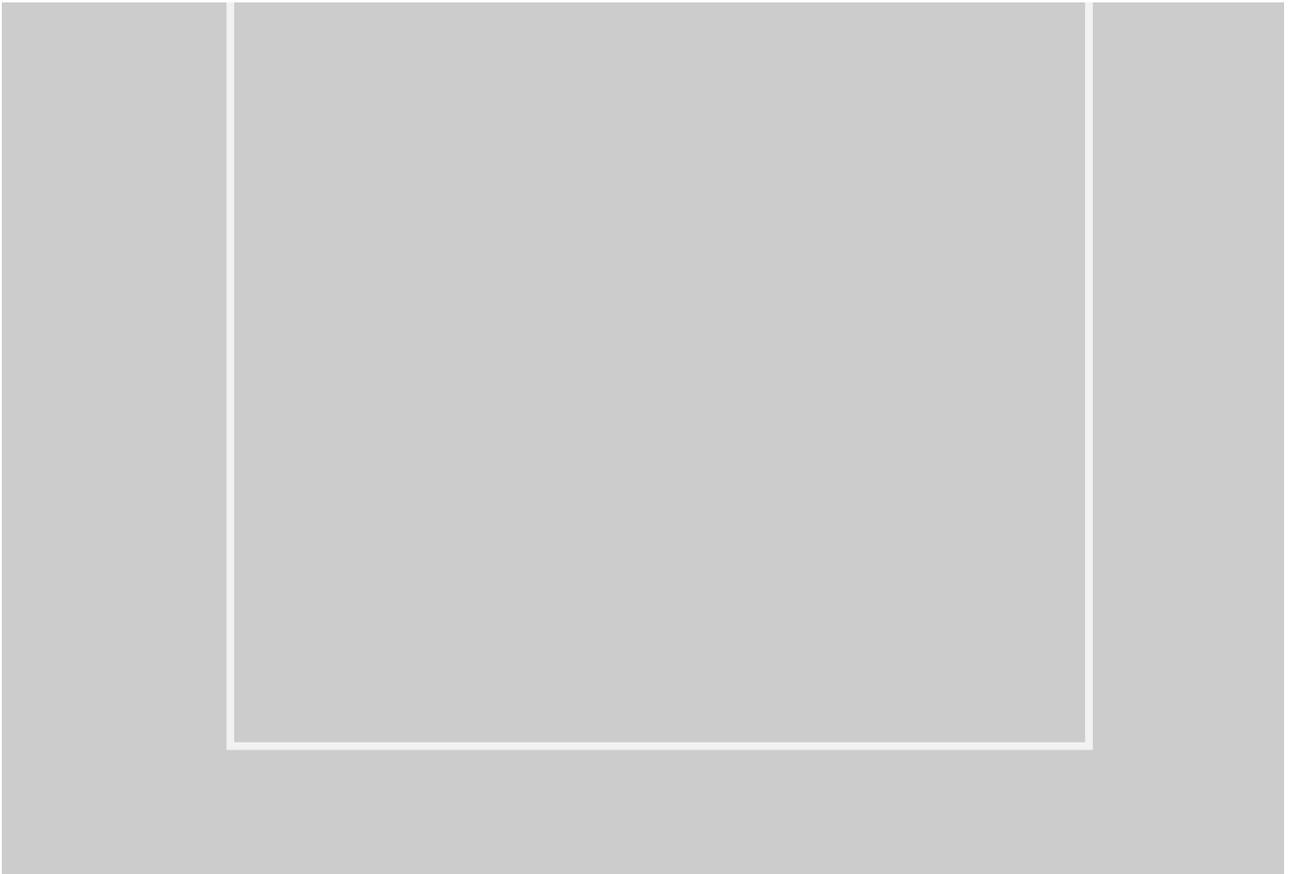
조 달 청

# 순 서

<b>[요 약]</b> .....	<b>i</b>
<b>I. 추진 배경</b> .....	<b>1</b>
<b>II. 추진 경과</b> .....	<b>2</b>
<b>III. 규제혁신 추진방안</b> .....	<b>3</b>
1. 혁신성장 지원 .....	4
2. 현장활력 제고 .....	9
3.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	14
4.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	19
<b>IV. 향후계획</b> .....	<b>22</b>



## 요 약



## 1

### 추진 배경

- 新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추진
  - 특히, 공공조달은 명시적 法규제보다 현장의 지침·관행·계약 조건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多 → 조달시장 활력제고에 장애
- (기본방향)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으로 규제 혁신 추진

- ① (현장) 법령상 규제보다 지침·계약조건·관행 등에 숨은 현장규제를 우선 혁신
- ② (체감) 조달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
- ③ (대안)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가급적 덜한 대안을 철저히 모색

※ 현장규제 발굴 공모전,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426개 제안  
⇒ 既 조치, 단순문의 등을 제외한 138개 추진과제안 선정

## 2

### 추진 경과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민관합동)」 발족('22.7월)
  - \* 위원장(조달청장), 위원(내부 8명, 외부위원 6명)
- (1차) 기업의 「비용·시간·서류」 부담 완화 22개\* 과제 검토('22.8월)
  - \* 비용부담 완화 8개, 시간단축 9개, 서류 간소화 5개
- (2차) 조달현장의 「활력·편의·균형」 제고를 위한 34개\* 과제 검토('22.10월)
  - \* 현장활력을 위한 제도개선 12개, 기업 편의성 제고 16개, 과도한 제재 완화 6개
- (3차) 「혁신·신성장 지원」 등 잔여과제 검토('22.12월)

◇ 경제규제혁신TF에서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확정

\*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

## 1. 혁신성장 지원 (총 30개 과제)

##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 **(현황)**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수요기관이 매년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해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

\*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지정하여 시범구매 지원('22년 기준, 1,574개 제품)  
[2023 CES에서 15개 제품이 'CES혁신상' 수상, 이중 2개는 '최고혁신상' 수상]

- **(개선)** 혁신제품을 조달청 종합쇼핑몰('22년 기준 25.4조원)에 등록해 거래를 활성화(원클릭 구매)하고 납품실적 요건 적용 완화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업체 단가계약」 공고(23.1분기 계약) 및 「MAS 업무처리규정」 개정(23.上)

**시점**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 지원(23.1월 기준)

- 납품실적 등이 필요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

##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 **(현황)**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매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3년차에 집중되나, 본격적 판매가 개시되는 시점에 지정기간이 만료

\* '23년 기준,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업체 수는 320개(345개 제품)

- **(개선)** 현행 3년으로 제한된 지정기간의 합리적 연장 추진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23년, 기획재정부 협조)

## □ 혁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안전장비의 보급 지원

- **(현황)** 소방·경찰·해경·軍 등 고위험 직업군에게 고품질의 장비가 필수적이나 가격경쟁 심화, 인력·예산 한계 등으로 보급 지연

- **(개선)** 신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안전 장비를 다양한 경로로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일선에 신속히 보급('23년 별도예산 18억원 확보)

< 발굴 진행 중 사례(소방청 수요, '23년 지정예정) >

구분	수요기관(소방청)의 혁신수요	혁신제품 발굴방향
소화약제	전기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터리 화재 진압에 검증된 소화약제가 없음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약제 중 화재 진압 검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발굴
웨어러블 로봇	현재 개발된 소방용 웨어러블 로봇은 부피가 너무 커서 보호장비와 동시 착용이 어려움	보호장비와 동시 착용 가능한 소방용 로봇을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

□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절차 마련**

- **(현황)** 자율주행차와 같이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 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신청 규정이 없어 지정에 제한
- **(개선)**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23.1분기)

**사례** '차량플랫폼(A社 특허) + 장애물 센서(B社 특허) + 주행지도(C社 특허)'로 구성된 자율주행차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제한 ⇒ 공동수급체 방식의 신청 허용

□ **혁신제품 규격 추가·변경 절차 개선**

- **(현황)**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규격 이외에는 추가·변경이 힘들고 복잡한 심의과정 요구
- **(개선)** 규격 추가 절차를 신설하고, 경미한 규격변경 시 복잡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제고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23.1분기)

**사례** '비대면 안면인식 출입관리 로봇 키오스크'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A사의 경우 제품 규격서에 치수를 단순 오기하였으나 심의절차 등 변경에 5개월 소요

□ **혁신제품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개선 기회부여**

- **(현황)**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 재도전 절차가 없어 시범사용 결과를 반영한 기술보완 선순환 구조 취약  
 \*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를 '성공, 보류, 불량' 3단계로 나누고 '보류' 판정 시 혜택 제외
- **(개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시범사용 결과판정 유형에 '보완' 단계를 신설\*하여 재시험 기회 부여  
 \* 보류를 '보완'과 '실패'로 세분화하고, '보완' 판정 시에는 재시험 실시

< 시범사업 결과판정 기준 개선(예시) >

구분	성공	보완(신설)	실패	불성실 이행
판정 기준	시범사업 성실히 수행 성능점수 80점 이상 신뢰성 인정	성능점수 50점 이상 신뢰성 추가확인 필요 재시험 필요 등	성능점수 50점 미만 신뢰성 미흡 재시험 부적절 및 포기	시범사업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
혜택 및 조치	↓ 단가계약 혜택	↓ 성능개선 후 재시험 (성공기회 부여)	↓ 성능개선 유도 (혜택은 없음)	↓ 경고 및 제재 등 불이익 부여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23.1분기)

## □ 국산부품 사용장려를 위한 우수제품 규격서 수정 허용

- **(현황)**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22년 공급실적 4조원)의 규격서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는 데에 장애  
\* 최초의 우수제품 지정기준에 준하는 별도 기술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등) 필요
- **(개선)**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규격서 변경을 허용해 국산부품 사용 활성화 유도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3.上)

## 2. 현장 활력 제고 (총 31개 과제)

### □ 미리 주문된 납품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

- **(현황)** 쇼핑물 가격을 인상할 때, 既 주문 물량은 인상전 단가 적용  
→ 주문과 납품 사이의 가격변동분을 계약자가 과도하게 부담  
\* 공사용 자재는 공사발주 시점에 주문해 납품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발생
- **(개선)** 既 주문된 미납제품에도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여 기업 부담 완화  
\*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납품기한 물품에 우선 적용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上)

### □ 비축 재고를 탄력 운영해 원자재 필요 기업 지원

- **(현황)**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비철금속 6종 등 24.9만톤)은 품목별 안전재고 기준을 두어 일정량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  
\* 비축물자 재고는 ①전쟁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재고와 ②평상시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재고로 구분해서 운영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때에는 기업 방출 요청은 많지만 적정재고 확보가 어려워 재고 유지를 위해 기업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 발생
- **(개선)** 단기적 공급장애 발생 등 수급불안 시 안전재고 일부 물량을 탄력 운영해 방출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 지원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22.12월 선조치)

## □ 쇼핑물 제품 판매자율성 확대 및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 **(현황)** 쇼핑물 할인판매 및 납기 연장 회수가 제한(각 7회, 2회)되어 납품에 지장을 주고 2단계경쟁\* 시 가격 요소가 주된 선정 요인으로 작용

\* 쇼핑물 MAS 물품을 5천만원(중기간 1억원) 이상 구매 시 5개 이상 업체의 품질가격을 비교검토

- **(개선)** 계약연장 시 할인판매를 추가허용하고, 납기연장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2단계경쟁 시 품질평가 요소를 강화\*

\* (예시) MAS 2단계경쟁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품질관리 → ②가격 순으로 평가

☞ 조달청 「물품 MAS 처리규정」 및 「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개정(23.上)

## □ 쇼핑물 거래정지 기간 산정의 합리적 개선

- **(현황)** 유해물질 검출 등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쇼핑물 거래정지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판매중지 기간 운영 중

\* 판매중지 동안에는 쇼핑물 화면에 상품이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불가

- **(개선)** 실제 판매 불가능한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 산입해 중복제재 성격을 갖는 문제 해소

☞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23.上)

## □ 쇼핑물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 **(현황)**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동안 법정인증 등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제재 조치

- **(개선)** 경미한 사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대신 잠정 판매중지 조치 후 일정요건\*하에서 자격 회복 시 판매재개

\* (요건 예)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

☞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上)

### 3. 시간 · 비용 · 서류 부담 완화 (총 33개 과제)

#### □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 · 시간 단축

- **(현황)**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는 많아 등록에 장시간 소요
- **(개선)**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22.12월 3개품명 시범조치)  
\* (시범사업차선분리대 등 3개품명, 16개사 → ('23년)100개 품명 → ('24년)전면확대(746개 품명)

**효과** 계약체결 소요기간 평균 50일에서 최대 5일(재계약의 경우)까지 단축

#### □ 쇼핑몰 주문 로봇처리 프로세스 구축

- **(현황)**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주문(납품요구)하면 조달청 담당자가 주문서를 수기로 처리(주문처리에 약 8시간 소요)
- **(개선)** 로봇처리 프로세스방식(RPA)으로 개선해 주문처리 소요시간 대폭 단축('22.9월 선조치)

**효과** 연간 137만건의 쇼핑몰 주문의 개별접수 처리 8시간 소요 → 즉시 처리

####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 **(현황)** 쇼핑몰 등록제품과 같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예상량'을 기준으로 산정(예상량×계약단가×10%)  
- 업체는 많은 주문을 받고 싶어서 납품예상량을 불필요하게 높게 설정하는 경향 → 이에 따라 보증금도 증가

**사례** 창업 7년차 A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1.7억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관련 인증취소로 계약해지 → 5억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몰수, 부정당제재 대상

- **(개선)** 전체 계약업체 대상, 1회 최대납품가능량(그에 따른 보증금) 과다 책정 위험 안내 및 수정계약 지원('22.9~)  
- 추가적으로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 완화를 위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기획재정부 협조)

**효과** 조달청의 안내를 통해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인하해 252억원 비용부담 완화  
- 1.8만건 계약분석 → 8천건 인하 → '22.9~12월간 252억원 완화 → 연간 약 756억원 경감 예상

## □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조달청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

- **(현황)** 입찰자는 투찰할 금액의 견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견적능력 부족으로 입찰대행사에 별도 비용을 지급하며 견적 의뢰
- **(개선)** 공개중인 공사비 조사내역서<sup>공종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sup> 외에 공사비 산정을 위한 상세내역을 추가제공해 입찰자의 직접 견적 지원  
☞ 입찰공고서에 반영 후 시행('22.9월 선조치)

**효과** 개선후 적격심사 1,104건에 대해 상세내역을 제공한 입찰공고 이용 효과 발생

## □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기한·대상 합리화

- **(현황)** 해외조달(외자입찰) 시, 모든 입찰자에게 '해외공급자증명서'를 징구함에 따라 낙찰을 받지 못한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  
\* 외자입찰 시 해외 공급자가 입찰자와 함께 계약 이행을 책임진다는 약속서
- **(개선)**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입찰단계→낙찰단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낙찰예정자만 제출하도록 제도개선('22.10~)

**효과** 연간 2,000건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비용 절감

## □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 일부 품명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나 연 최대 3회 납품검사, 정기 품질 점검 등으로 품질 관리 가능
-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 입찰공고서에 반영 후 시행('22.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중으로 현재 6품목 시행)

**효과**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연간 17.5억원 절감 → 계약기간 3년간 52.7억원 경감

## □ 기업의 실적증명서 온라인 전송 서비스 확대

- **(현황)** 조달기업들은 매년 계약실적을 유관 협회\*에 신고 중이나 온라인 연계·전송 대상은 4개 협회에 불과  
\* 입찰참가자격 여부와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실적 취합 목적  
\*\* 연계가 되지 않은 협회로는 기업들이 일일이 실적증명을 종이서류로 제출
- **(개선)** 온라인 연계·전송서비스 대상 협회를 4개에서 8개로 확대('22.12~)

**효과** 기업들의 협회 서류제출 업무(연간 30만건)를 수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를 신속히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선조치)** 전체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선조치 완료
    - \* 조달청 훈령으로 유관부처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60개의 과제도 금년 상반기 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할 예정
  - **(이행점검)** 조달청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한 주기적 점검
    - 성과를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과제별 추진현황 모니터링, 성과점검 등을 주도면밀하게 실시
  - **(홍보교육)**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를 즉시 체감하고 개선 조치가 신속히 효과를 발휘하도록 물품·용역·시설공사 등 분야별 안내·교육·홍보 추진
    - ‘달라지는 조달현장 제도’에 대한 분야별 매뉴얼, 가이드 등을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소통 촉진(2~3월 집중안내)
      - \* 전국 11개 지방조달청 및 유관부처(중기부 등) 합동으로 제도설명·교육 및 상담
- **20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
  - 그림자규제 개선을 위한 ‘Bottom-Up’ 방식에 더하여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의 혁신을 ‘Top-Down’ 방식으로 병행 추진
    - ① 직접생산기준 등 산업변화에 뒤쳐진 낡은 제도 개선,
    - ②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과도한 부정당 제재의 합리적 완화,
    - ③ 新성장 4.0 지원 강화 등으로 규제개혁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
  - 조달청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현장규제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대국민 홍보 및 안내



# 본 문



## I. 추진 배경

경제 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및 혁신기술·신산업관련 **조달제도 개선** 시급

### ①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실현 → 정부 역점과제

○ 그간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핵심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  
→ 기업 활력 저하 및 시장경제 기능 위축

☞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경제규제혁신TF’ 등 부처별 규제혁신TF 구성 등 민간 중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0)’,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22.6.23)’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혁파 추진 → ‘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도 규제혁신 지속 추진 예정

### ② 기업 발목 잡는 조달 현장 ‘그림자 규제’ → 조달기업 성장 저해

○ 조달계약은 계약법령에 명시된 방법·절차에 따라 진행 → 계약법령에 없는 세부 방법·절차 등을 위해 훈령, 지침, 계약조건 등 추가 마련

☞ 계약법령 상의 규제보다 조달 현장에서 적용되는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sup>1)</sup>가 기업 활동 방해 多

### ③ 혁신·신기술 산업 조달시장 진입 규제 → 新산업 성장 저하

○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신기술 발전이 필수 → 공공조달은 정형화된 상품·서비스 중심의 규제 체계 유지로 신산업 진입에 제한

☞ 혁신조달, 벤처나라, 우수제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1) 명시적인 법령 등에 근거없이 관례, 행정지도, 구두지시 등에 의한 규제

## II. 추진 경과

### 1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체계 · 원칙 마련 (‘22.7월)

-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 확정 (조달청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① (현장) 법령상 규제보다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에 숨은 현장규제를 우선 혁신
- ② (체감) 조달거래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속도감 있게 검토
- ③ (대안) 필수적 규제도 가급적 덜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대안적 규제 완화 추진



### 2 기업의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22개 과제 추진방안 검토 (8월)

-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426건 발굴 → 138개 규제혁신 검토과제 선정  
\* 분석·검토를 통해 既 조치, 중복제거, 단순 업무문의 등 제외
- 조달 업체의 시간·비용·서류 부담을 줄이는 22건의 과제를 논의



### 3 현장의 「활력·편의·균형」 제고 관련 34개 과제 추진방안 검토 (10월)

- 조달거래의 활력 저하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제재를 적정화 하는 등의 34건의 과제 검토



### 4 「혁신·신성장 지원」 관련 등 잔여 과제 추진방안 검토 (12월)

- 혁신제품의 판로지원, 혁신기술의 공공확산 및 신산업·기술 개발 독려 등을 위한 잔여과제 검토



### 5 경제규제혁신TF에서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확정 (금일)

-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등을 포함해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체 과제인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건에 대해 종합 정리하고 추진방안 확정  
\*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 Ⅲ. 규제혁신 추진방안

#### 목표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

#### 3대 원칙

- ① [현장] 지침·관행 등 현장규제 우선 혁신
- ② [체감) 핵심 규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
- ③ [대안) 필수 규제도 완화된 대안을 모색

#### 추진 과제 (138개)

##### 혁신성장 지원(30개)

- ① 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
- ② 혁신기술 공공확산 유도
- ③ 신산업·기술개발 독려

##### 현장 활력 제고(31개)

- ① 환경변화 신속대응
- ② 조달쇼핑몰 생동감 제고
- ③ 과도한 제재 완화

#####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33개)

- ① 조달거래 속도 제고
- ② 조달시장 진입비용 경감
- ③ 서류부담 완화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44개)

- ① 시스템 편의성 강화
- ② 안내·홍보 확대
- ③ 수요기관 부당요구 방지 등

# 1. 혁신성장 지원 (30개)

## 가. 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 (11개)

### ①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 (현 황)** 수요기관이 혁신제품<sup>2)</sup> 구매를 원하는 경우, 업체·수요기관이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거래활성화에 걸림돌
- (개 선)** 혁신제품을 조달청 종합쇼핑몰<sup>3)</sup>에 등록하여 기업의 판로 강화 및 수요기관 구매 편의성 제고
  - **(단가계약)** 혁신제품 시범사업 성공판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쇼핑몰 단가계약(수의계약) 체결**[소요시간 <sup>現</sup>26일→<sup>改</sup>클릭1회로 단축]
    - \*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기간: ~'23.12.31)해 확대 여부 검토
    - ☞ **조치사항:** 「혁신제품 지정업체 단가계약 시범사업」 공고('22.12월 공고 → '23.1분기 계약)
  - **(실적요건폐지)** 다수공급자계약<sup>4)</sup> 체결 시 **납품 실적요건\*** 적용 완화

\* [사례]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 지원(23.1월 기준)

- 납품실적 등이 필요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

☞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23년 상반기)

### ②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 (현 황)** 혁신제품의 경우 최초 3년의 기간 동안 지정하나 초기 1~2년간은 제품 홍보 등에 소요되어 실질적인 납품은 3년차에 집중
- (개 선)** 공공성 개선 효과, 판매실적(공공+민간) 등을 감안하여 **3년의 지정기간에 연장기간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23년 기준,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업체 수는 320개(345개 제품)

☞ **조치사항:**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23년)

2)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의 시범구매 지원

[2023 CES에서 15개 제품이 'CES혁신상' 수상, 이중 2개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 수상]

3) '21년 기준 공공조달시장 184.2조원 중 21.9조원 차지(물품 거래실적 71.4조원 대비 30.7%)

4)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22년 기준 17.7조원)

▶ 「혁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혁신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공고완료
2	혁신제품 쇼핑몰 등록 시 실적요건 폐지	'23.上
3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23년
4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매칭 강화	선조치
5	AI기반 SW사업 발주지원 플랫폼 제공	선조치
6	상용SW 직접구매 사전검토평무 전산화 추진	'23년
7	공공분야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MAS 신규계약 공급 확대	'23년
8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MOU 추진	선조치
9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기준 객관화	'23.1분기
10	우수제품 지정일 선택범위 확대	'23.上
1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희망가격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3년

**나. 혁신기술 공공확산 유도 (8개)**

**① 혁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안전장비의 보급 지원**

- (현 황) 소방·경찰·해경·軍 등 고위험 직업군에게 고품질의 장비가 필수적이나 가격경쟁 심화, 인력·예산 한계 등으로 보급 지연

\* [사례1]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특정업체와 단가계약 후 납품받았으나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품질저하 및 검사 불합격에 따른 납품지연 문제 발생('18년)  
 \* [사례2] 해경 건식잠수복 다수공급자계약(MAS) 추가경쟁 입찰 시 업체간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상세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구성품(내피)의 경우 품질 저하 발생

- (개 선) 신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안전 장비를 다양한 경로로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일선에 신속히 보급('23년 별도예산 18억원 확보)

< 발굴 진행 중 사례(소방청 수요, '23년 지정예정) >

구분	수요기관(소방청)의 혁신수요	혁신제품 발굴방향
소화약제	전기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터리 화재 진압에 검증된 소화약제가 없음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약제 중 화재 진압 검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발굴
웨어러블 로봇	현재 개발된 소방용 웨어러블 로봇은 부피가 너무 커서 보호장비와 동시 착용이 어려움	보호장비와 동시 착용 가능한 소방용 로봇을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

☞ 조치사항: 국방부 등 6개기관에 시범구매를 통한 우수장비 보급예정('23년 상반기)

## ②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절차 마련

- (현 황) 현행 규정상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 (예,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청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에 제한

[사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플랫폼, 장애물 감지 센서, 주행 지도 등 다수 기업이 복합적으로 참여해 제품의 기능을 구현하고 개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다수의 특허권자가 참여하는 제품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도 혁신제품 지정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

- (개 선) 특허권을 가진 다수의 업체 등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



\* 기술권리는 업체간 협정서에 의하고, 제조 능력은 구성원 중 일부가 보유한 경우 인정

☞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23년 1분기)

### ▶ 「혁신기술의 공공확산 유도」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혁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안전장비의 보급 지원	'23.上
2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 절차 마련	'23.1 분기
3	혁신장터 이용자 편의성 제고	선조치
4	벤처나라 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간 확대	'23.上
5	혁신조달 연계형 R&D지원, 시범구매 예산 증액	선조치
6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23.上
7	혁신제품 협업 기관 지속 확대	선조치
8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검토	'23년

## 다. 신산업 · 기술개발 독려 (11개)

### ① 혁신제품 규격 추가 · 변경 절차 개선

- (현 황)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규격 이외에는 추가 · 변경이 곤란하거나 복잡하고 장기간의 심의과정 요구\*

→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규격추가, 경미한 규격오류 시정 곤란

\* 규격 추가 절차 부재, 경미한 규격변경 시에도 조달사업법령상의 심의절차 필수

[사례] '비대면 안면인식 출입관리 로봇 키오스크'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A사의 경우 제품 규격서에 치수를 단순 오기하였으나 심의절차 등 변경에 5개월 소요

- (개 선) 규격추가 절차를 신설하고 경미한 규격변경 시 심의절차 간소화

☞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23년 1분기)

### ② 혁신제품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개선 기회부여

- (현 황)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를 '성공, 보류, 불량' 3단계로 나누고 '보류' 판정 시 단가계약 대상에서 제외

- (개 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시범사용 결과판정 시 현행의 '보류'를 세분화해 '보완\*'과 '실패'로 분류

\* '보완'의 단계에는 기술이나 제품성을 보완해 재시험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

< 시범사업 결과판정 기준 개선(예시) >

구분	성공	보완(신설)	실패	불성실 이행
판정 기준	시범사업 성실히 수행 성능점수 80점 이상 신뢰성 인정	성능점수 50점 이상 신뢰성 추가확인 필요 재시험 필요 등	성능점수 50점 미만 신뢰성 미흡 재시험 부적절 및 포기	시범사업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
↓ 혜택 및 조치	↓ 단가계약 혜택	↓ 성능개선 후 재시험 (성공기회 부여)	↓ 성능개선 유도 (혜택은 없음)	↓ 경고 및 제재 등 불이익 부여

☞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23년 1분기)

## ㉓ 국산부품 사용장려를 위한 우수제품 규격서 수정 허용

- **(현 황)**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sup>5)</sup>의 기술·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우수제품 규격서의 수정과 변경을 엄격히 관리\*중

\* 최초의 우수제품 지정기준에 준하는 별도 기술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등) 필요

- **(개 선)** 규격서에 포함된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신속한 규격서 변경을 허용해 국산부품 사용 유도

- 외국산 부품을 기업이 직접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의 규격서 수정절차 간소화(기술심사 생략)

\* 다만, 핵심기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의 단종 등의 사유로 제한

☞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23년 상반기)

### ▶ 「신산업·기술개발 독려」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절차 개선	'23.1 분기
2	혁신제품 규격 변경 시 복잡한 협의회 절차 간소화	'23.1 분기
3	혁신제품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개선 기회부여	'23.1 분기
4	국산부품 사용장려를 위한 우수제품 규격서 수정 허용	'23.上
5	벤처나라 제품의 추가 우대방안 검토	'23.上
6	중소·창업기업의 이음장터 등록을 확대하고 서비스 상품 거래 활성화	선조치
7	과제 발굴 경로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혁신제품 발굴	선조치
8	혁신제품 시범구매 우대 대상 확대	'23.1 분기
9	상용SW 등 신규 ICT 상품 쇼핑물 공급 확대	'23.上
10	상용SW 직접구매 절차 효율화 추진	'23 년
11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	선조치

5) 성과와 품질 우수한 중기제조물품을 심사를 통해 지정해 수의계약, 종합쇼핑물 등록 등 혜택 부여 ('22년 공급실적 4조원)

## 2. 현장 활력 제고 (31개)

### 가.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 (13개)

#### ① 미리 주문된 납품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

- (현황) 쇼핑물 가격을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할 때, 이전에 주문이 완료된 물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상 전 단가로 납품
  - 주문과 납품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계약자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 발생

[사례] 공사용 자재는 공사발주 시점에 주문해 납품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발생

- (개선) 既 주문 제품 중 미납제품에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 반영
  -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장기 납품기한(예. 1년 이상)의 경우에 시범적용
    - ☞ 조치사항: 시범운영 기준 마련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 다수공급자계약 단가조정 적용 개선(안) 비교 >



#### ② 비축 재고를 탄력 운영해 원자재 필요 기업 지원

- (현황)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sup>6)</sup>은 품목별 안전재고 기준을 두어 일정량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
  - \* 비축물자 재고는 ①전쟁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재고와 ②평상시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재고로 구분해서 운영

6)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 필요자원을 저장하였다가 비상시 국가 위기극복 및 평시 가격안정 등을 위해 방출하는 제도로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등 22.6만톤), 희소금속 9종(2.3만톤, 광해공단으로 일원화 예정) 등 총 24.9만톤과 감염병 대비 마스크 3천4백만장을 비축중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때에는 기업 방출 요청은 많지만 적정재고 확보가 어려워 재고 유지를 위해 기업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 발생
- (개선) 단기적 공급장애 발생 등 수급불안 시에는 안전재고 일부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방출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

**< 공공비축물자의 상황별 방출기준 개선(안) >**

구분	긴급 시	수급 불안 등	평상시
현행	안전재고 포함 비축 전량	운영재고의 50~100%이내	운영재고의 30%이내
개선(안)	변경없음	운영재고의 50~100%이내 + <b>안전재고 일부(탄력재고)</b>	운영재고의 30%이내 + <b>안전재고 일부(탄력재고)</b> (단기적 공급장애 발생 시 등 제한적으로 운용)

☞ 조치사항: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22.12월 선조치)

▶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미리 주문된 납품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	'23.上
2	비축재고를 탄력 운영해 원자재 필요기업 지원	선조치
3	도서지역 납품검사 방식 현실화	선조치
4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미종결 납품요구 취소요청 절차 마련	'23.上
5	탄력적 계약조건으로 납품업체의 리스크 분담	선조치
6	운송용역계약 계약금액 조정 유류비 산정 시 적정연비 반영	선조치
7	국민 안전·생활 밀접 분야 서비스 신상품 개발	선조치
8	협상계약 온·오프라인 혼합평가 신설	선조치
9	시스템장비 물가변동 적기 반영을 위한 단가조정 주기 단축	선조치
10	국방피복류 예정가격 현실화	'23.上
11	수요자 친화적인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운영	'23 년
12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개선	'23.2월
13	주요 시설자재 가격조사 방법 개선	선조치

## 나. 조달 쇼핑몰 생동감 제고 (8개)

### ① 쇼핑몰 제품의 판매 자율성 확대

- (현 황) 나라장터 쇼핑몰제품의 할인판매 횟수 제한 및 수요기관 일방 납기연장 등 기업의 자율성과 수요자 편의 증가를 제약
    -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한 7회로 고정되고, 수요기관의 일방 납기연장 허용(2회)으로 기업의 납기운용 제약
  - (개 선) 계약연장 시에도 연장 기간에 비례해 할인을 추가허용\*하고 납기연장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하에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
    - \* (예시) 1년 연장 시 할인행사 횟수 2회 추가 등
- ☞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규정」 등 개정(23년 상반기)

### ② 지나친 가격경쟁 유발 요소 제거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sup>7)</sup> 시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sup>①</sup>「고용우수기업」 → <sup>②</sup>「제안가격(제안을) 낮은 자」 순으로 업체 선정중
    - 또한, 2단계 경쟁을 위한 4종의 표준평가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은 가격위주의 평가방식(「평가방식 II」) 선호
  - (개 선) 품질평가 요소를 강화해(예. <sup>①</sup>일정 품질관리요건 충족\* → <sup>②</sup>가격평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줄이고 고품질 조달물자를 적기 공급되도록 개선
    -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결과, 결함없는 경우 만점 → 결함정도(경/중/치명)에 따라 감점 적용
    - 표준평가방식은 수요기관의 선호 항목과 '품질관리·사후관리'를 반영해 2종의 평가방식으로 통합·간소화
- ☞ 조치사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3년 상반기)

7) 쇼핑몰에서 MAS 물품을 5천만원(중기간 1억원) 이상 구매 시 5개 이상 업체의 품질가격을 비교·검토

▶ 「조달 쇼핑몰 생동감 제고」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쇼핑몰 제품 할인판매 횟수 추가 허용	'23.上
2	다수공급자계약 납기연장 횟수제한 해제	'23.上
3	MAS 2단계경쟁 동점자 처리기준을 품질 위주로 변경	'23.上
4	쇼핑몰 2단계평가방식 통합·단순화	'23.上
5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 판매 재개 허용	'23.上
6	직생유효기간 갱신 후 판매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23.上
7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23.上
8	판매중지 재개를 위한 종합쇼핑몰 시스템 개선	'23.上

**다. 과도한 제재 완화 (10개)**

**①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산정의 합리적 개선**

□ (현 황) 유해물질 검출 등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에 앞서 조달기업의 의견 제출기간 동안 판매중지기간 운영 중  
 \* 판매중지 동안에는 쇼핑몰 화면에 상품이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불가

□ (개 선) 실제 판매 불가능한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기간에 산입해 중복제재 성격을 갖는 문제 해소

☞ 조치사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 거래정지·판매중지 사실상 중복제재 개선(6개월 처분의 경우 예시) >



## ② 쇼핑물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 **(현 황)**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동안 법정인증 등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제재 조치**
  -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자격으로 계약이행을 한 것이라 부정·부당한 계약이행에 해당되어 제재 조치**
  - 다만, **납품행위가 없어 수요기관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측면**

- **(개 선)** 경미한 사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대신 제재효과가 덜한 판매중지 후 일정요건\*하에서 자격 회복 시 판매재개**

\* (요건 예)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

☞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23년 상반기)**

### ▶ 「과도한 제재 완화」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쇼핑물 거래정지 기간 산정의 합리적 개선	'23.上
2	쇼핑물 입찰참가 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23.上
3	다수공급자계약 직접생산증명서 만료 시 제재 경감	'23.上
4	쇼핑물 2단계경쟁 품질관리평가 감점범위 완화	'23.上
5	납품검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 확대	선조치
6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제도 개선 검토	'23.上
7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성실도 평가 개선 검토	'23.上
8	우수제품 납품불이행이 없는 계약 건의 제재 경감	'23.上
9	직접생산 위반여부 판단 시 시정기회 부여	선조치
10	건설용역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입찰감점 폐지	선조치

### 3.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 가. 조달거래 속도 제고 (12개)

##### ①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

- (현 황)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는 많은 반면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시간·비용에 부담
- (개 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 시스템을 시범도입해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22.12월 선조치)
  - \* (시범사업)차선분리대 등 3개품명, 16개사 → (‘23년)100개 품명 → (‘24년)전면확대(746개 품명)
- 계약기간 평균 <sup>개선전</sup>50일 → <sup>개선후(재계약)</sup>5일로 단축 예상
  - \*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하여 20일 내외 소요 예상

< 쇼핑몰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전·후 비교 >

구분	기 존	개 선
서류	종이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	Paperless(외부시스템 연계)
절차	최대 10단계	3단계
소요기간	50일	(재계약) 5일, (신규계약) 20일

##### ② 쇼핑몰 주문 로봇처리 프로세스(RPA)<sup>8)</sup> 구축

- (현 황)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주문(납품요구)하면 조달청 담당자의 납품요구서 송신과정을 거쳐 주문 확정
  - 연간 137만여 건의 종합쇼핑몰 주문을 조달청 담당자의 관여 과정으로 인해 구매시간 지연 초래(주문에서 접수까지 8시간 소요)
    - \* 쇼핑몰 주문 추이: (‘19년)112만건 → (‘20년)132만건 → (‘21년)137만건 → (‘22년)137.4만건
- (개 선) 로봇처리 프로세스방식으로 개선해 자동접수(‘22.9월 선조치)
  - 886개 품명에 대한 주문 43만여 건(6.9조원)을 신속히 대응

8)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

▶ 「조달거래의 속도 제고」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	선조치
2	쇼핑몰 주문 로봇처리 프로세스 구축	선조치
3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23년
4	긴급 수요물자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	선조치
5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선택자유화	선조치
6	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공동 활용	선조치
7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선조치
8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표준화	'23.5월
9	다수공급자계약 연장요건 명확화	'23.上
10	목록화 절차 간소화	선조치
11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변경 절차 단순화	선조치
12	농공단지 수의계약 일반제조물품 공장 실사 완화	'23.上

**나. 조달시장 진입비용 경감 (8개)**

**①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 **(현 황)** 쇼핑몰 등록제품과 같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

\*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1회 최대납품가능량(납품량×계약單價) × 10%

○ 생산능력을 초과한 납품가능량 제시\* 시 보증금도 증가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연평균 50억원) 시 실제 큰 금액의 몰수사례 발생

\* 1회 최대납품가능량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사례]** 창업 7년차 A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체결 후 **1.7억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관련 인증취소로 계약해지 → **5억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몰수**, 부정당 제재대상

- (개 선) 전체 계약업체 대상, 1회 최대납품가능량(그에 따른 보증금) 과다 책정 위험 안내 및 수정계약 지원 (‘22.9월 선조치)
- 추가적으로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 완화를 위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성과]** 기업들이 조달청의 안내를 통해 쇼핑물등록제품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여 252억원의 비용 부담을 완화  
 - 1만여개사의 1.8만건 계약을 분석 → 계약보증금이 과다한 경우 등 8천건 인하여도 → ‘22.9~12월 4개월간 약 252억원을 완화 → 연간 약 756억원 경감 예상

**②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조달청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

- (현 황) 입찰자는 투찰할 금액의 견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견적능력 부족으로 입찰대행사에 별도 비용을 지급하며 견적 의뢰
-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직접견적 역량을 높이고자 입찰공고에 공사비 조사내역서<sup>공종별</sup> 재료비·노무비·경비<sup>합계</sup>를 공개하나 실효성은 미흡
- (개 선) 입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 (세부공종별 일위대가<sup>9)</sup>) 추가 공개해 입찰 공고(‘22.9월 선조치)

**[성과]** 개선 후 적격심사 1,104건에 대해 상세내역을 제공한 입찰공고 이용  
 - (개선전) 조사내역서에 “세면대 설치 공정”의 총합만 공개  
 (개선후) “카운터설치”, “세트앵커”, “형강” 등 세부공종별 일위대가 모두 공개

▶ 「조달시장 진입비용 경감」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단가계약 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선조치
2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조달청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	선조치
3	차량임대 서비스 진입요건 완화	선조치
4	규격미달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선조치
5	창업·벤처기업의 직접생산 협업 대상 확대	선조치
6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3년)을 선택방식으로 전환	선조치
7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선조치
8	시설공사 낙찰가에 적정공사비 반영 강화	선조치

9) 일위대가 : 공종별로 단위(m<sup>2</sup>, m<sup>3</sup>등)당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품셈에서 정한 재료할증과 노무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한 단위당 공사비

## 다. 서류부담 완화 (13개)

### ①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기한·대상 합리화

- **(현 황)** 해외조달(외자입찰) 시, 안정적인 공급선 없는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공급자증명서'를 징구
  - \* 외자입찰 시 해외 공급자가 입찰자와 함께 계약 이행을 책임진다는 약속서
- 그러나 입찰단계에서 모든 입찰자에게 이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한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
  - \*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해 입찰무효 처리되는 사례 빈발
- **(개 선)**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입찰단계→낙찰단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낙찰예정자만 제출하도록 제도개선

구분	기 존	개 선
제출기한	· 입찰단계(→입찰서 제출마감일)	· 낙찰단계(→ 낙찰자 확정 전)
제출대상	· 모든 입찰자	· 낙찰예정자 1인

☞ 조치사항: 입찰공고서에 반영 후 시행('22.10월 선조치)

⇒ '22.10~12월의 3개월간 50개 업체가 혜택을 받아 1년 추정 약 200개 업체 부담경감 예상

### ②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장기화(1년 → 통상3년)됨에 따라 매년 중간점검 시 일부 품명은 2개월~1년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 \*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등 16개 대상 매년 중간점검에 의한 시험성적서 요구
  - **(개 선)**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 시험성적서 제출 전면폐지
    - 시험성적서가 없어도 최대 3회 납품검사, 조달품질원 정기품질 점검 등으로 안전·품질 관리 가능
- ☞ 조치사항: 「입찰공고문」 변경·시행('22.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중으로 현재 6품목 시행)

⇒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연간 약 175억원\* 절감 예상(3년 계약 기준 527억원)

\* '22년 해당 기업 351개사에 대한 1년치 추정액(성적서 발급 비용 건당 약 5백만원 감안)

## ㉓ 기업의 실적증명서 온라인 전송 서비스 확대

- (현 황) 조달기업들은 매년 계약실적을 유관 협회\*에 신고('22년 107만건)
  - \* 입찰참가자격 여부와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실적 취합 목적
  -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계약 실적증명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4개 협회로 제한
    - \* 연계가 되지 않은 협회로는 기업들이 일일이 실적증명을 종이서류로 제출
- (개 선) 온라인 연계·전송 서비스 대상 협회를 4개에서 8개로 확대
  - 연간 30만건 이상의 협회제출 업무를 수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구분	기 존	개 선
연계대상 단체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정보원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총 4개)	기존 4개 단체 +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문화재수리협회 ·소방시설협회 (총 8개)

☞ 조치사항: 계약실적 온라인 전송서비스 개선('22.12월 선조치)

### ▶ 「서류부담 완화」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기한·대상 합리화	선조치
2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일부완료
3	기업의 실적증명서 온라인 전송 서비스 확대	선조치
4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	'23.상
5	직접생산 생산주체 자체기준 명확화	선조치
6	수출유망기업 재지정 시 단순변경사항은 현장실태조사 면제	선조치
7	건설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간소화	선조치
8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서에 계약연장 허용 여부 및 제출서류를 명확히 기재	'23.상
9	전시문화 사업 평가 시 전문인력 평가를 기술등급평가로 개선	선조치
10	우수제품 재계약 및 협업체 관련 제출 서류 경감	'23.상
11	설계도서의 전자방식 제출 허용	선조치
12	나라장터를 통한 시설공사 계약 기술검토 보완 서류 접수방식 개선	'23.상
13	건설공사 기술경쟁 강화를 위한 기술형입찰 내실화	선조치

## 4.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 가. 시스템 편의성 강화 (10개)

#### ① AI 챗봇을 이용한 고객 응대서비스 제공

(현황)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콜센터의 응대 자원이 한정적이고 시스템상 안내 등의 일방적 전달 수단은 이해가 어려움

(개선) AI 기술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사용자의 초기 및 단순 질의·응답을 채팅을 통해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안내는 콜센터로 연계('23년)

(효과) 실시간 및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챗봇 응대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 동시 제고

#### ② 물품 계약단가 조정신청 시스템 개선

(현황) 물가상승에 따라 물품의 계약단가 조정신청을 하고 싶지만 조달청의 보도자료 외에는 안내나 나라장터의 신청메뉴, 매뉴얼 등이 없어 곤란

(개선) 나라장터에 계약단가 조정신청에 대한 전용 메뉴 등을 만들어 개선하고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기업 편의 제공('23년 상반기)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신청 관련 매뉴얼을 사례별로 제작하여 배포

(효과) 기업이 편리하게 계약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해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시스템 개선을 통한 편의 제공」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AI 챗봇을 이용한 고객 응대서비스 제공	'23년
2	물품 계약단가 조정신청 시스템 개선	'23.상
3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신청 시 첨부파일 오류 개선	선조치
4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 단순 실수 방지를 위한 안내 개선	선조치
5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시스템 개선	'23년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망 정보의 조달청 입찰등록 연계	선조치
7	시스템을 이용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자동화	'23.상
8	대량구매 할인율 적용 금액 표기	'23.상
9	시설공사 맞춤형 업체검색 메뉴 제공	'23년
10	공사계약 입찰내역 작성 프로그램 개선	선조치

## 나. 안내 및 홍보 확대 (11개)

### ① 동영상 활용한 효율적인 나라장터 안내

- (현황) 나라장터를 처음 사용하는 업체 및 기관의 경우 용어 등의 단순 지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단순 문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
- (개선) 매뉴얼·문서 안내에 더하여 동영상 등을 통해 나라장터 업무 안내('23년)
- (효과) 이해하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스트리밍 SNS(유튜브 등)를 활용해 초기 이용자의 나라장터 진입문턱을 낮추고 피드백(댓글 등)을 통해 의견도 수렴

### ② 현장소통을 위한 주요 품목별 실무협의체 운영

- (현황) 업계 건의 및 수요기관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조달청 주관 간담회를 수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업계·소속단체 별로 소통을 운영해 업계·수요기관 간 의견교환 창구 필요
- (개선) 주요 품목별로 업체, 수요기관,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현장방문·소통을 실시해 품목별로 세부적인 의견 교환 및 애로 해소('22년 선조치)
- (효과) 품목별 협의체를 활용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제조·납품현장의 각종 그림자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방안 협의

#### ▶ 「안내 및 홍보 확대」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동영상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나라장터 안내	'23년
2	현장소통을 위한 주요 품목별 실무협의체 운영	선조치
3	창업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면제사유 상세 안내	선조치
4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대상 관련 안내 개선	선조치
5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서 및 규격서 재정비	상시
6	소상공인 우대제도의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선조치
7	공간정보사업 협상계약 시 차등점수제 활용 권고	선조치
8	우수조달물품의 수요기관 적극 안내	선조치
9	성능인증 기반 우수제품 안내 지원	선조치
10	혁신시제품 지정 세부추진 일정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선조치
11	신규 우수제품 기업에 대한 홍보체계 마련	선조치

## 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 등 기타 과제 (23개)

### 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 부당요구 방지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일부 수요기관이 별도의 조건을 달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예. 규격, 납품조건의 변경)가 있어 조달기업에 부담
- (개선) 시스템 안내문구를 통해 수요기관이 계약조건 변경 등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내용을 알리도록 시스템 개선('23.상반기)
- (효과) 수요기관에게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부당한 요구로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

### ② 공공 IT·SW사업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방지

- (현황) 공공 IT·SW 사업에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 업체에 부담
- \* 당초 계약 시 과업을 불분명하게 제시 후 사업 중 세부 개발 내용을 추가 요청하는 행위 등
- (개선) 계약 변경조건을 명확화해 정당한 대가 지급없이 과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 ('23.1.1 선조치)
- (효과) 수요기관은 사전에 과업을 면밀히 검토해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안심하고 개발에 전념

#### ▶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 등 기타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일정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 부당요구 방지	'23.상
2	공공 IT·SW사업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방지	선조치
3	행사대행용역에서의 불합리한 사후정산요구 방지	선조치
4	공사현장 산업재해발생 신고를 위한 모바일앱 구축	'23.2월
5	수출유망기업 기업심사 시 ODA사업 수행실적을 심사에 포함	선조치
6	조달현장에 맞는 물품 목록체계 도입	선조치
7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요건 면제	선조치
8	장기 존속 여성기업 입찰가점 차별 제거	선조치
9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참가범위 확대	선조치
10	전문검사기관별 검사실적 편차 해소방안 마련	선조치
11	협상계약 시 수혜자 의견 반영한 참여평가 방식 도입	선조치
12~23	그 밖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 등 기타 과제	선조치 혹은 23년내

## IV. 향후 계획

-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를 신속히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선조치)** 전체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선조치 완료
    - \* 조달청 훈령으로 유관부처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60개의 과제도 금년 상반기 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할 예정
  - **(이행점검)** 조달청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한 주기적 점검
    - 성과를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과제별 추진현황 모니터링, 성과점검 등을 주도면밀하게 실시
  - **(홍보교육)**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를 즉시 체감하고 개선 조치가 신속히 효과를 발휘하도록 물품·용역·시설공사 등 분야별 안내·교육·홍보 추진
    - ‘달라지는 조달현장 제도’에 대한 분야별 매뉴얼, 가이드 등을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소통 촉진(2~3월 집중안내)
      - \* 전국 11개 지방조달청 및 유관부처(중기부 등) 합동으로 제도설명·교육 및 상담
- **20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
  - 그림자규제 개선을 위한 ‘Bottom-Up’ 방식에 더하여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의 혁신을 ‘Top-Down’ 방식으로 병행 추진
    - ① 직접생산기준 등 산업변화에 뒤쳐진 낡은 제도 개선,
    - ②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과도한 부정당 제재의 합리적 완화,
    - ③ 新성장 4.0 지원 강화 등으로 규제개혁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
  - 조달청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현장규제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대국민 홍보 및 안내